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2017. 07.

군 산 시

(가칭)드림에너지(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군산시와 (가칭)드림에너지주식회사는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불임과 같이
합의하고, 이에 날인한다.



본 실시협약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17년 07월 일

[주무관청]

군 산 시

대표자 시장 문



[사업시행자]

(가칭)드림에너지주식회사
대표회사 GS건설(주)
대표이사 임 병 용





목 차

전 문	1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11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12
제 2 장 기본 약정	13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3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3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4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5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5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16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6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6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6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8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9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0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20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20
제 19 조 (공사비)	21
제 20 조 (공사기간)	21
제 21 조 (공사의 착수)	22
제 22 조 (공정관리)	23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3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24
제 25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4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등)	25
제 27 조 (문화재)	26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26
제 29 조 (지체상금)	27
제 30 조 (보험가입)	28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28
제 32 조 (기성검사)	29
제 33 조 (민원처리)	29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30
제 35 조 (건설사업관리)	31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32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32
제 38 조 (조기준공)	34
제 39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34
제 6 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제 40 조 (운영비용)	35
제 41 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36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36
제 43 조 (운영실적의 제출)	36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7

제 45 조 (경미한 사업)	38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39
제 46 조 (사업수익률)	39
제 47 조 (사용료 및 전력판매수입 기준의 결정)	39
제 48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초과수입의 환수)	41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42
제 49 조 (건설보조금)	42
제 50 조 (행정적 지원)	43
제 51 조 (사업부지의 제공)	43
제 52 조 (보상업무)	45
제 53 조 (수요위험의 처리)	45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45
제 54 조 (위험배분의 원칙)	45
제 55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46
제 56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47
제 57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48
제 58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50
제 10 장 협약의 종료	50
제 59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50
제 60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51
제 61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53
제 62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54
제 63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55
제 64 조 (매수청구권)	56
제 65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56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57
제 6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57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57
제 68 조 (출자지분의 변경)	57
제 69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58
제 70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59
제 12 장 분쟁의 해결	60
제 71 조 (분쟁의 해결)	60
제 72 조 (중재)	60
제 13 장 기타 사항	61
제 73 조 (협약의 변경)	61
제 74 조 (협약의 수익자)	62
제 75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62
제 76 조 (일부무효)	62
제 77 조 (목적적 조건의 배제)	63
제 78 조 (비밀유지)	63
제 79 조 (통지)	64
제 80 조 (언어)	64
제 81 조 (준거법)	65
제 82 조 (경과조치)	65
제 83 조 (협약의 효력)	65
별첨 1 (본 사업의 개요)	
별첨 2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별첨 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별첨 4 (민간투자비 투입일정)	
별첨 5 (자금투입계획)	
별첨 6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및 재활용품 선별량)	
별첨 7 (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	

별첨 8 (보험가입)

별첨 9 (관리운영권의 인계)

별첨 10 (운영비용)

별첨 11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별첨 1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별첨 13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 확인필증)

별첨 14 (해지시지급금)

별첨 15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125

126

전 문

군산시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는 BTO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이하 “제3자 제안 공고”라 한다)을 2015년 09월 01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15년 11월 18일 (가칭)드림에너지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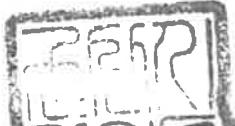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별첨1(본 사업의 개요)와 같다.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비철 및 고철 판매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사용료, 기타 운영수입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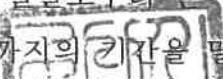
- 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월 : 어느 역월의 특정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설기간 :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 대한민국 법률 제13805호 건설기술진흥법을 말한다.
 4.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 관리 등의 시행) 및 동법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건설보조금 : 제49조(건설보조금)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총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7.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사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공사비 :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0. 공사착수일 : 제21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 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1.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2.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4. 기대수익의 현재가치 : 본 협약 별첨6(사용료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및 재활용품 선별량)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15.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

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및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8호(2014.05. 21)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16. 기본재무모델 :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7. 기준이자율 :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율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18. 기준재무모델 :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9. 기준사용료 : 제47조(사용료 및 전력판매수입의 결정)에서 정한 2012년 11월 30일자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 사용료를 말한다.
20. 기타운영수입 : 전력, 비철 및 고철 판매대금 등을 말한다.
21. 경미한 사업 :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의 단서 및 제45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2. 담보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3.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4. 문화재 : 대한민국 법률 제13964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5.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12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첨15(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사용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6.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14242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말한다.
27.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692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2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29. 법령 :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0. 법령 등 :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31. 보건 및 안전 규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 규칙, 기준을 말한다.
32.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하나로서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33. 본 사업 :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4. 본 사업부지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35. 본 사업수입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사용료(폐기물 및 재활용품 반입비) 수입과 기타운영수입을 말한다.
36. 본 사업시설 :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환경에너지시설, 환경자원시설, 환경순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

37.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38. 분기 :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3월31일 또는 4월1일부터 6월30일 또는 7월1일부터 9월30일 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9. 불가항력 사유 :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40. 비교재무모델 :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41.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03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42.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3. 사업수익률 : 본 협약 제46조(사업수익률)의 수익률을 말한다.
44.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가칭)드림에너지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45. 사업연도 :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6. 사업이행보증 :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47. 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량에 대한 대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

48. 사용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49. 설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50.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51.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2012년 11월 30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52. 시공자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53. 제3자 제안공고 : 군산시 공고 2015-1315호 고시한 제3자 제안공고를 말한다.
54. 실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55. 실시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8(2014.05.21))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56.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

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57. 예비비 :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58.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59.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60. 운영년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년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년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1. 운영비용 : 본 협약 별첨10(운영비용)의 운영비 내역 항목으로 구분한 비용들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62. 운영설비 :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운영에 공여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부속시킨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63. 원화 :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를 말한다.
64.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65.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66. 인·허가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기타 관계 기관, 기타 제반공급을 제공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67. 일 또는 날 :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한다.
68. 자(者) :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69. 자금재조달(Refinancing) :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0.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1. 자금차입계약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72. 자본금 :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73. 재무모델 : 별첨15(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74. 전력판매수입 :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되는 REC 판매수입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75. 전문기관 : 종합전문설계용역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또는 평가법인 등으로서 수시로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어 회계업무, 법률업무나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6. 제반공급 :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77. 제세공과금 :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78. 준공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79.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그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80. 준공일 :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81. 준공전 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준공확인 등)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82. 준공확인필증 :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83. 지방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1419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84.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 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85. 착공일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보고서 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86. 채권금융기관 등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87.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88.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89.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90. 최초사용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말한다.
91. 추정 반입량 : 본 사업시설에서 처리되는 추정반입량으로서 본 협약 별첨6(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량)에 명시된 반입량을 말한다.
92. 추정 사용료수입 : 별첨7(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에 명시된 특정 운영년도 사용료 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93. 출자예정자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4.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68조(출자자 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95. 출자지분 : 각 출자자의 지분을 말한다.

96. 폐기물 : 군산시 및 새만금 1(일)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압축포장가연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생산되는 압축포장 가연물을 말한다.
97. 하도급법령 : 대한민국 법률 제1414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말한다.
98. 해지일 :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99. 협약당사자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100.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 교토의정서 12조 규정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말한다.
101.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2.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 한전(전력거래소)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
103.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4.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 한다. 본 협약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② 본 협약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또는 부록을 의미한다.
-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자, 설기술용역업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제3자 제안공고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드림에너지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

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청구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 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재활용품을 전량 처리하여야 하며, 본 협약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 CDM사업에 의한 온실가스배출권(CERs)은 주무관청이 가진다. ~~단, 친환경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되는 REC 판매수입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③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 있고, 본

협약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와 같이 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109,282]백만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38,677]백만원을 제외한 금[70,605]백만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 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

는 경우

3.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예시) 한전수탁비 조정),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채납부가가치세 한시적 영세율 적용 조항의 효력 종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② 본 협약 상 총사업비에 반영된 매입세액불공제액과 실제 매입세액불공제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의 차이는 총사업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 금액보다 실제 건설사업 관리계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건설사업관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④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57조(불가항력 사

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⑦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별첨3(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조정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 체결 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별첨5(자금투입계획)과 같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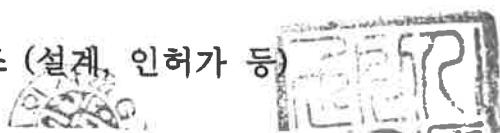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첨5(자금 투입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게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3자 제안공고(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 부록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는 본 협약 체결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

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상 공사비를 초과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진청할 수 없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제 19 조 (공사비)

공사비는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기준 금[89,443]백만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30개월(종합 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로 한다.
- ②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착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 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5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

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를 수행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은 주무관청 관내의 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장비·자재는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 조정에 대해서는 제5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7 조 (문화재)

-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의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문화재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 조정에 대해서는 제5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 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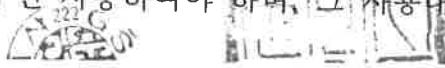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 30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별첨8(보험가입)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에게 매분기 1회 이상 및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매분기 1회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제5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32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 ②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 본 사업시설의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 ⑤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5 조 (건설사업관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1조(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른 검사, 제32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6조(예비준공검사 등)에 따른 예비준

공검사,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 시, 이로 인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 이로 인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제9장(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2개월 전까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의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38 조 (조기준공)

- ① 협약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준공일로부터 당초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무관청은 조기준공의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시점을 앞당기거나(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이 앞당겨진 만큼 종료시점 역시 앞당겨짐)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39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전 사용인가를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 및 비용의 처리는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일부가 준공(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0 조 (운영비용)

-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105,485]백만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첨10(운영비용)과 같다.
- ②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 운영여건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 ③ 본 협약 상 운영비용에 반영된 매입세액불공제액과 실제 매입세액불공제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운영비용에 반영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의 차이는 운영비용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별첨10(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시 법령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여부를 고려한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1 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 “운영자” 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 결과 및 쟁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법령 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3 조 (운영실적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사업 연도의 폐기물량 및 재활용 품 선별량과 본 사업 시설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주무관청에게 서면 제출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운영실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 5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 연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 연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

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본 사업의 대기질 및 수질 등에 관한 법정배출부과금(법령상 규정된 과태료, 부과금 등) 및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등 관련된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별첨11(성능보증 및 규제조치)에 따른 성능보증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6항에 따른 법정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별첨11(성능보증 및 규제조치)에 따라 본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제6항에 따른 법정배출부과금 상당액은 공제하도록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대수선을 별첨15(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상의 대수선 대상물건의 명세, 교체시기 및 교체횟수, 대수선비용에 따라 시행한다. 단, 대수선 교체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 별첨15(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에 기재된 대수선 대상물건의 명세, 교체시기, 비용과 달리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대수선을 시행한다.
- ⑨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본조 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내구연한 이내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체비용의 부담주체, 부담방법, 교체결과 설비 운영상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45 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6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30%(세후 4.79%)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및 제70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 조 (사용료 및 전력판매수입 기준의 결정)

- ①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본 사업시설의 추정반입량 및 추정사용료수입은 별첨6(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및 재활용품 선별량)에 제시된 연도별 추정 폐기물량 및 별첨7(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에 제시된 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기준의 추정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기준사용료는 [153,308원/톤](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면세)으로 하며, 최초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012년 11월 30일부터 운영 개시일 전월까지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개시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게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최초 사용료
2. 사용료산출 기초자료
3. 사용료 청구방법
4.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등
5.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최초사용료를 제외한 연도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전년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 적용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사용료를 2월말까지 결정하여,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이 경우에 협약 당사자가 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사용료 수준 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사용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사용료 수준조정의 타당성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⑤ 매년도 사용료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 ⑥ 본 사업시설의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전력판매수입 기준가격은 전 운영기간 중 동일하게 140원/kWh(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을 적용한다.

제 48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초과수입의 환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청구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량 및 재활용품 선별량을 계량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동청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된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③ 제39조(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에 의한 사용기간 동안에는 본 조의 제2항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한다.
- ④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사용료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본 조 제2항에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매 2개년분 실제 전력판매수입이 본 협약 별첨7(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해당 2개년분 추정 전력판매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수입은 별첨7(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의 <7-2>(전력판매수입 초과율별 초과수입 분배기준)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분배한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49 조 (건설보조금)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38,677]백만 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별첨3(건설보조금 지급일정)과 같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분기별로 별첨3(건설보조금 지급 일정)이 정한 일정에 따르되 공사수행 누계 실적공정률(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공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지급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²²²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누계 실적공정이 누계 계획공정에 미달하여 예정된 건설보조금의 지급을 유보한 경우, 미달된 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건설보조금 지급시 유보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지급기한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제22조(공정 관리)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부진공정만회 대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적공정률과 관계없이 당해 분기에 지급하여야 할 건설보조

금 전액(전분기미지급액 + 금분기 지급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재정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유보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⑦ 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단, 상기 일정비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 이후 건설보조금을 선집행 할 수 있으며, 집행방법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50 조 (행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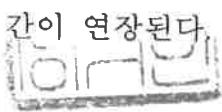
- ①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교통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는 주무관청이 추진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 ③ 주무관청은 본 협약 체결 후 본 사업시설의 사용료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관련된 시설의 신설 및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제 51 조 (사업부지의 제공)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일정 및 부지의 인도 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본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및 담보권의 부담 없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 사업부지 주변의 도로, 보도 등 주변 시설의 훈령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 또는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본 협약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한 본 사업부지의

제공시점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부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 ⑦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 사업부지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자연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제 52 조 (보상업무)

주무관청은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의 각종 손실보상 등의 처리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 53 조 (수요위험의 처리)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4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55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를 '자유해'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2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1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56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의 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포함한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기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57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관계기관 요청 포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징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 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청구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1.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 (복구비용과 사용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한다.
 - 다. 위 ‘가’ 호 및 ‘나’ 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사용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용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⑥ 협약당사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58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59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이행 계획수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시설점검 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첨9(관리운영권의 인계)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 60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5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5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 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67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64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 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1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제60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본 사업시설이 정상적으로 건설 및 운영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 62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첨 14(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3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2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

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64 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 ·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자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이라고 한다.)은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65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조달

제 6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 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 ~~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8 조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드림에너지주식회사의 출자자(이하 예정출자자를 포함한다.)구성 및 그 지분율은 별첨1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 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을 포함한다)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 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또는 제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출자자 변경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 69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 상 관리운영권(건설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0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 사유(범위)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비율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된다.
-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자금재조달 범위, 이의산정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1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민간투자법 제44 조의2(이의신청)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한다.
- ③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합의관할은 주무관청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 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72 조 (중 재)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② 중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며,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 절차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3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74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와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5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한 면책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76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7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 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78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79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수신 : 자원순환과
전화 : 063.454.4000 팩스 : 063.452.8210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수신 :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전화 : 02.2154.1114 팩스 : 02.2154.0922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신~~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 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0 조 (언어)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모든 의사교환은 한국어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한글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본이 해석 상 우선한다.

제 8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82 조 (경과조치)

본 협약체결 이후 민간투자사업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중앙정부, 도, 시, 군, 기타 관계기관의 제도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그를 법령 및 변경된 제도의 내용이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 83 조 (협약의 효력)

- ①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협약은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07월 일

[주무관청]

군산시

대표자 시장 문동신 (인)



[사업시행자]

(가칭)드림에너지주식회사

대표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병용

